

# 보조금 지급대상품목 지급기준

| 연번 | 코드        | 대상 품목명               | 대상 설비명  | 보조금 지급기준  |
|----|-----------|----------------------|---|---|
| 1  | 12-05-011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Lock-out, Tag-out)  | 1. 기동스위치 및 개폐용벨브가 설치된 주요설비의 보수작업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지급<br>2. 세트(35개)단위로 보조지급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세트 지원 가능(근로자 10인당 1세트)<br>※보조금 지급신청시 설비보유현황 징구 또는 현장방문 확인   |
| 2  | 12-05-012 |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br>확동식프레스 클러치개조, 일행정<br>일정지기구, 재기동방지장치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3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 일것<br>2.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프레스 급정지 성능에 적합한 형식을 보조지급<br>3. 확동식 프레스는 손쳐내기식, 수인식안전장치 보조지급<br>4. 확동식 프레스에 대해 클러치개조, 일행정일정지기구 및 재기동 방지장치 등 필요 방호조치 보조지급  |
| 3  | 12-05-014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1. 재정지원사업 안전조치기준 2-1 [엔코일러], 2-2 [롤피더], 2-3 [에어피더]에 따름<br>2. 프레스 자동송급 및 취출설비 지원시에는 방음부스설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소음관리 대책제시<br>3. 프레스 자동송급 및 취출설비를 설치하더라도 필요한 방호조치는 설치되어 있을 것  |
| 4  | 12-05-015 | 금형교환장치 (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프레스 금형교환장치<br>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1. 재정지원사업 안전조치기준 2-4 [금형교환장치]에 따름   |
| 5  | 12-05-009 | 끼임방지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br>톨리기안전장치(급정지장치,역회전장치,울·안내로울러)<br>컨베이어안전장치(덮개,울,연동장치,비상정지장치) | 1. 위험점이 완전히 방호되는 구조일 것<br>2. 톨리기급정지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br>3. 톨리기안전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5 [톨리기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br>4. 컨베이어 안전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별표13 [컨베이어검사기준]에 따름       |
| 6  | 12-05-020 |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br>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br>무선원격제어기<br>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 1. 과부하방지장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3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 일 것<br>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br>3.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받은 것일 것<br>4.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기준(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3 조제1호 및 안전검사 고시)에 미흡한 경우 2톤미만 권상용에 한해 보조지급 |
| 7  | 12-05-209 | 천장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 1.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01.01.)이전 제작설치된 것으로 '설비 구조물 불량'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보조지급(안전인증비용은 소요금액으로 인정)<br>2.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1호[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  |
| 8  | 12-05-037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 방호울<br>안전매트<br>라이트커튼(광전자식 방호장치)<br>레이저스캐너<br>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br>가동허가장치 등          | 1. 안전매트 및 라이트커튼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인증품일 것.<br>2. 방호장치의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별표14 [산업용로봇검사기준]에 따를 것   |

| 연번 | 코드        | 대상 품목명              | 대상 설비명   | 보조금 지급기준  |
|----|-----------|---------------------|--|---|
| 9  | 12-05-054 |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사출성형기 취출로봇 및 호퍼로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지원사업 안전조치기준 2-5[사출성형기 취출로봇], 2-6 [사출성형기 호퍼로더]에 따름</li> <li>2. 취출로봇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li> <li>3. 호퍼로더는 원료투입이 1m이상 높이에서 수행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보조지급(단독지원 불가)</li> </ol>   |
| 10 | 12-05-069 |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br>지게차운전석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가소유 지게차에 대해 신청사업주 소속노동자가 직접 운행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지급(사업장 외 사용 포함)</li> <li>2. 안전벨트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li> </ol>  |
| 11 | 12-05-208 | 건설기계 충돌예방 설비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접 운행 또는 임대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전후방감지장치 등 충돌재해예방설비 보조지급</li> <li>2. 차대번호별 동일 설비 중복보조지급 불가</li> </ol>   |
| 12 | 12-05-078 | 추락방지시설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설비등의 안전난간설치<br>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br>채광창 안전덮개<br>이동식사다리<br>안전대부착설비(안전블록 등)<br>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 임차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단 및 고정식 사다리, 안전난간, 안전방책 등은 산업안전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li> <li>2. 안전블록은 안전대 포함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 인증품 일 것.</li> <li>3. 이동식사다리는 아래에 따라 보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작업이 있는 경우 교체 또는 신규 보조지급</li> <li>-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버팀대 필수설치)</li> <li>- A형사다리, 말비계형사다리 : 2.0m 이상 제품 보조불가</li> <li>- 작업발판사다리 : 3.5m이상 제품 보조불가</li> <li>- 안전모(모든작업) 및 안전대(작업높이* 2.0m이상에 적용) 착용 조건(완료시 자체개선확인)</li> <li>※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 높이</li> </ul> </li> <li>4. 채광창 안전덮개는 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 2-11 [지붕채광창 안전덮개]에 따름</li> </ol> |
| 13 | 12-05-025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br>권과방지장치<br>낙하방지장치<br>방호울공사 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산업용리프트에 한하여 보조지급</li> <li>2. 과부하방지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 [방호장치 안전 인증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일 것</li> <li>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름</li> </ol>  |
| 14 | 12-05-080 |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일 것.</li> <li>2.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지급</li> </ol>   |
| 15 | 12-05-189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br>권과방지장치<br>전복방지장치<br>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의 전복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전복방지장치 설치시 보조지급</li> <li>2. 전복방지장치는 적재하중, 불균일미각도, 아웃트리거길이, 실린더압력등을 고려하여 허용전도 모멘트에 도달시 경고신호 및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지급</li> <li>3.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는 안전바, 코너 안전봉 보조지급</li> <li>4. 차량탑재형의 경우 투자완료 확인전 안전검사 완료조건으로 보조지급하고, 시저형의 경우 안전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li> </ol>   |

| 연번 | 코드               | 대상 품목명               | 대상 설비명  | 보조금 지급기준   |
|----|------------------|----------------------|---|--|
| 16 | 12-05-210        |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 포함 원격제어기 등)  |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일 ('20.07.31.)이전 제작 또는 수입된 3톤미만 무인식 크레인에 한하여 보조지급<br>2. 무선원격 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을 받은 것일 것  |
| 17 | 12-05-211        |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전용 비계 추락 방지망 등   | 1. 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 2-12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전용 비계]에 따름   |
| 18 | 12-05-191<br>197 |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 시스템비계(191)<br>안전방망(197)<br>사다리형 작업발판(197)   | 1. 시스템비계는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 발판 및 부속품 등이 일체화된 비계로 플라잉넷 또는 수직 보호망 중 한 개 품목 이상 필수 신청 조건<br>2.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br>-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br>- 사다리 : 폭30cm내외×길이2m<br>3. 추락방지망<br>-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br>4. 수직보호망<br>-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br>5.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보조지급 현장에 한하여 보조지급<br>6.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현장당 2개이내 보조지급   |
| 19 | 12-05-996        | 화재폭발 예방설비            | 환기팬 및 덕트<br>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비상조명등, 유도선 및 유도등-건설업 본사에 한함)<br>대형소화기(20kg이상,건설업 본사에 한함)<br>용접작업불연포<br>휴대용 복합가스농도측정기<br>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유해가스모니터링시스템(건설업본사: 이동식 제조업 등·고정식 및 이동식) 내화도장공사(건설업 본사제외) 이동식포소화설비(건설업 본사제외)<br>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양압설비 등(건설업 본사 제외) | 1. 환기팬은 일반형, 방폭형 지원가능하나, 방폭지역의 경우 방폭 인증제품에 한하여 보조지급가능<br>2. 유도선 및 유도등은 DC24V 배터리식으로 유효점등시간 30분 이상 제품일 것<br>3. 대형소화기는 소방법에 따른 형식승인검사합격품에 한하며 간이소화장치는 보조지급불가<br>4. 용접작업 불연포는 내열온도1000℃ 이상으로 석면·중금속 미포함 제품일 것<br>5. 내화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에 한하여 지원하되 전문건설업체 시공에 한함<br>6. 이동식포소화설비는 100L이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되 약제는 1회분 보조지급 가능<br>7.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유해가스모니터링 시스템,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일 것.   |
| 20 | 12-05-118        | 소음방지시설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br>저소음대체자동화설비  | 1.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 및 단위 작업장소인 경우 시설 또는 설비개선 등을 통해 소음수준이 5dB(A)이상 감소되거나 또는 90dB(A)미만(강렬한 소음 및 충격소음에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지급<br>2. 개선전·후에 대한 소음측정값 기재<br>3. 공기압축기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에 따름<br>※ 저소음 공기압축기로 교체 시 필수 부대설비를 포함하되, 공기 저장탱크(Air Receiver T/K)는 지원대상에서 제외<br>4. 저속분쇄기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br>5. 기존설비 모터용량(kW 또는 hp)의 150% 이내 설비로 대체<br>6. 대상기존설비는 인입배선을 최단으로 절단하고 본체 및 구조물을 분해·절단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 |

| 연번 | 코드        | 대상 품목명               | 대상 설비명  | 보조금 지급기준   |
|----|-----------|----------------------|---|--|
| 21 | 12-05-120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설비 | 국소배기장치, 발산원 밀폐설비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 해당시)  | 1. 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 2-7 [양산품 국소배기장치], 2-8 [공사품 국소배기장치]에 따름<br>2. 후드형식 및 제어풍속 등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br>3. 개선 전·후 측정값 기재<br>4. 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에 대하여 밀폐설비 설치가 가능하여 유해물질 발산억제가 가능한 경우 밀폐설비를 보조지급         |
| 22 | 12-05-137 | 질식재해 예방설비            |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br>가스측정장비(산소농도측정기, 복합가스 농도측정기)<br>환기설비(환기팬, 환기덕트)<br>긴급구조설비(구조용사다리, 구명로프, 구조용삼각대세트등)<br>질식재해예방대체설비 | 1. 송기마스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인증품일 것<br>2. 공기호흡기는 소방청고시 제2019-14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일 것<br>3. 대체설비의 경우 대상기준설비는 인입배선을 최단으로 절단하고 본체 및 구조물을 분해·절단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 |
| 23 | 12-05-994 | 사회이슈품목               | 사회적 이슈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 코로나19 집단감염방역품목, 폭염재난에 방대책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21년기준)                          | 1. 품목별 기존 시달지침에 따라 보조지급  |
| 24 | 12-05-300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체육증진시설, 안전보건교육시설, 휴게시설, 목욕세탁시설  | 1. 처리규칙 별표1에 명시한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대상품 이외 품목은 보조지급불가   |
| 25 | 12-05-198 | 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         | 기타 유해·위험요인 개선 신기술적용 안전보건설비  | 1.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개선사항(기존 클린사업 제외품목은 보조지급불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결정<br>2. 산업안전보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 공인기관(S마크, KS마크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제품 - 신기술 적용 안전보건설비 등                           |

**참조1. ERP 입력시 보조지급품목 → 세부 보조지급 설비명 수정기입**

**참조2. 기존 클린사업 보조지급제외품목 (제12-05-198호 관련)**

작업장바닥기초및도장, 근로자신체조건에맞는작업발판, 위험물질제조·취급작업장의비상구, 전도방지및안전통로의 설치, 비상구표지판·비상유도등, 전격방지기능내장직류아크용접기, 크레인충돌및진동방지조치, 보수·점검시안전조치, 크레인출입문 잠금장치(운전실 타입), 방호덮개(검정품)부착탁상용연삭기, 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다이캐스팅기이형체스프레이장치, 방호조치가완비된탁상용드릴기, 제한속도·안전표지판, 고압가스용기전도방지조치, 용접기외함접지및전차단기, 전기아크용접기의절연홀더, 용접작업공정용접전선자동송급·회수장치등, 이중절연구조의전동공구, 전자파차폐설비, 국부조명및전체조명시설, 자동승강조명시설, 자연채광용설비, 주과수조절귀덮개, 살수·습기유지설비, 분진작업대체설비, 분진설비의산업용 바닥청소기, 유해물질취급작업대체설비, 습기제거환기설비, 전동지게차, 전동이동식대차등중량물 운반설비, 섬유원단적재설비, 요통 등근골격계질환발생공정자동화설비, 높이또는각도조절가능작업대, 컴퓨터키보드·팔받침대, 인체공학적수공구, 높낮이조절확대경, 저중량용기, 인력작업에의한중량물취급을 대체하는기계장치및설비, 탄력성및내충격성작업장바닥재, 근골부담작업대체 자동화설비, 안전·보건표지(무재해기록판 등 포함), 개인보호장구, 높낮이조절컴퓨터작업대및의자, 근력운동기기, 근지구력 운동기기, 유해광선차단판, 크레인조작용전기회로전압감압조치, 인쇄기용제자동투입기, 고열환기및온습도조절팬(Fan), 입식작업근로자용작업대, 발받침대, 차량상부덮개자동개폐기, 쓰레기수거차압착식진개장치, 호스릴(고압공기, 가스, 냉·온수용), 걸레물기제거기, 바닥미끄럼방지등의설비, 전동식계단운반기, 안전화분진제거기, 보호구보관함, 이동용구급함, 문틀협착방지시설, LED산업안전기록판전광판, 안전통로확보를위한적재대, 안전통로확보를위한공구함, 안전통로확보를위한작업대, 전동지게차, 전동이동식대차등중량물운반설비